

#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8. 24.
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서초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관광진흥사업, 지원,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5조)
- 다.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8조)
- 라.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16조)
- 마.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바.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서 의견 수렴 완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2018. 7. 5. ~ 2018. 7. 25. (20일간)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 권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 권고(권고안 반영)

##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)**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서초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관광진흥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관광진흥의 목표(비전)와 전략
2.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
3.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
4. 관광자원 발굴·보호·개발·이용 및 관리
5.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
6.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
7. 그 밖에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3조(관광진흥사업)**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·판매
2. 설명회·박람회 홍보 지원
3. 관광기념품·지역특산품 개발, 홍보 및 판매
4. 관광지 홍보를 위한 리플릿·기념품·영상물 제작 및 배포
5.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
6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관광활성화에 따른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,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
2.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
3.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, 규모,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**제5조(관광진흥 업무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,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)**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,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안내와 홍보

2.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

3. 문화관광 행사,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

4. 관광상품·기념품 개발 지원 및 전시·판매

5. 관광객 편의 증진

6.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**제7조(사전승인)** 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이 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이 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다른 조례의 준용)** 제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(의료관광)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9조(위원회의 설치)** 구청장은 구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진흥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**제10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2.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
3.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
4.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
5. 그 밖에 구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1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광관련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
2.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
3. 관광업무 담당국장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2조(위원의 해촉)**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관광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·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
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13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4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,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(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내용)과 의결서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.

**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.

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**제16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7조(지도·감독)**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된 것으로 본다.